



제1639호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946 호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보 지 정 책 과 2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1948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자 동 차 관 리 과 8 권리행사 통보
- 공 고 제 1949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통 행 정 과 1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1951 호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수정공고 기 획 예 산 과 28
- 공 고 제 1960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30
- 보 건 소 공 고 제 98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 식 품 위 생 과 33 소 폐쇄) 공고
- 보 건 소 공 고 제 101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 품 위 생 과 34 처리 공고

고 시

- 고 시 제 163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35
- 고 시 제 166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75호선 외 도 시 재 생 과 39 1)]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946호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복지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 연임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장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502, FAX453-25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복지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 연임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함

☐ 주요내용

- 관장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하며, 1회에 한하여”를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직원의 임면) ① ~ ③ (생략)	제3조(직원의 임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임면한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u>하며, 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 ----- <u>하며,</u>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948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1.10.8. ~ 2021.10.23.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42주4618 외 5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

2021년 10월 8일

남 동 구 청 장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1-00235	42주4618	SM3	이선기 6910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3, 1동 202호(논현동)	㈜인천폐차사 업소/ 2021.7.6.	남동구(세입징수과,자동차관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2021-00260	20오7752	세브링	김종천 771206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368, 603호(심곡동)	㈜인천폐차사 업소/ 2021.7.19.	우리파이낸셜(주) 서울강서경찰서(경비교통과) 원미구(세무1과) 부평구(주차지도과) 시흥시(클린도시과,세정과,주차단속팀) 부천시(차량관리과) 남구(교통민원과) 계양구(교통행정과) 서구(교통행정과)
2021-00292	46누4246	젠트라 1.2 DOHC	유태오 651215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34-15, 2층 201호(창전동)	㈜인천폐차사 업소/ 2021.7.1.	송파구(자동차관리과) 여주군(지역경제과) 미추홀구(교통민원과,교통행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징수팀) 이천시(교통행정과,세정과,차량등록사업소,환경보호과,징수과) 한국도로공사 남동구(교통행정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인천시(교통관리과) 여주시(교통행정과) 이천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부평구(주차지도과)
2021-00312	31두2331	E300	황상수 88120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78-23, 102동 203호(청호아파트)	㈜인천폐차사 업소/ 2021.7.7.	우리파이낸셜(주) 이형준 미추홀구(세무2과,교통민원과) 부평구(주차지도과,자동차관리과) 남동구(교통행정과) 인천남부경찰서 덕양구(교통행정과)

						구로구(주차관리과) 광명시(지도민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금천구(주차관리과) 연수구(사회복지과,세무2과) 강남구(주차관리과) 동작구(교통지도과) 한국도로공사(수도권, 부산경남) 부천시(장애인복지과,주차지도과) 서울시 중구(주차관리과) 서울시설공단(교통정책과) 부산시설공단(교량운영팀) 해운대구(교통행정과) 서울노원경찰서(영치) 천안시서북구(세무과)
2021-00324	15나2365	캡티바 2.0D 디젤	조선회 680801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6다길 76 (신림동)	㈜인천폐차사 업소/ 2021.7.6.	아주캐피탈(주)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시(징수과,주차지도과) 대전지방법원 남동구(교통행정과) 의왕시(교통행정과,세외수입체납팀) 광명시(지도민원과) 권선구(경제교통과) 팔달구(경제교통과) 관악구(38세금징수과,교통행정과) 인천남동경찰서
2021-00344	92다3323	포터 II (POR TER II)	곽진성 771005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61, 201동 1503호(산곡동, 한화아파트)	㈜인천폐차사 업소/ 2021.7.26.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부평구(환경보전과,교통행정과,세무1과) 인천지방경찰청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1-00235	42주4618	SM3	남동구 논고개로176번길 3	이*기	6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6번길 *, 1동 *02호(논현동)	2021.7.6.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21-00260	20오7752	세브링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0 인향콤비타워 지하3층 주차장	김*천	77****	경기도 부천시 **로 3*8, *03호(심곡동)	2021.7.19.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3	2021-00292	46누4246	젠트라 1.2 DOHC	남동구 간석동 176-5	유*오	65****	경기도 이천시 *교로 3*-1*, *층 *01호(창전동)	2021.7.1.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4	2021-00312	31두2331	E300	남동구 예술로204번길 27 D/S더웰가 주차타워	황*수	8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길 7*-*3, 10*동 20*호(청호아파트)	2021.7.7.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5	2021-00324	15나2365	캡티바 2.0D 디젤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127 만수주공5단지 505동 앞	조*화	68****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길 7* (신림동)	2021.7.23.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6	2021-00344	92다3323	포터 II (PORTER II)	고잔동 690-13 파인일레콘 이면도로	곽*성	77****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1, *01동 1*0*호(산곡동, 한화아파트)	2021.7.26.	(주)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1-1949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의 온라인 결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 등을 정비
-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금지 규정을 신설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 정비(안 제4조)
- 공영주차장의 이용금지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추가(안 제16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추가(별표 1)
-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수정(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10. 28.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낼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 연 락 처 : ☎ 453-2685, FAX 453-289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자료

○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1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의 온라인 결제 도입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 등을 정비
-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금지 규정을 신설

□ 주요 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 정비(안 제4조)
- 공영주차장의 이용금지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추가(안 제16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추가(별표 1)
-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별표 2)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주차장법」(2021. 1. 12., 일부개정, 2021. 7. 13. 시행) 제8조의2, 제9조, 제10조의2, 제14조, 제17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1. 7. 14., 일부개정, 2021. 7. 14. 시행)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차장에 따라 주차 개시 시간의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주차관제시스템에 주차 개시를 자진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다만, 이때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를 기준으로 1시간이 초과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며,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7.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8.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9. 유료 운영 주차장에 입차 후 10일 이상 주차하며 그 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 또는 탑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6.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제1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 30분까지	15분당		
1 급 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 급 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 급 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 급 지	300원	100원	3,000원	30,000원

< 비 고 >

1.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공영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3. 노외공영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4.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5. 월정기가 아닌 10일 이상의 주차의 경우 10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주차요금의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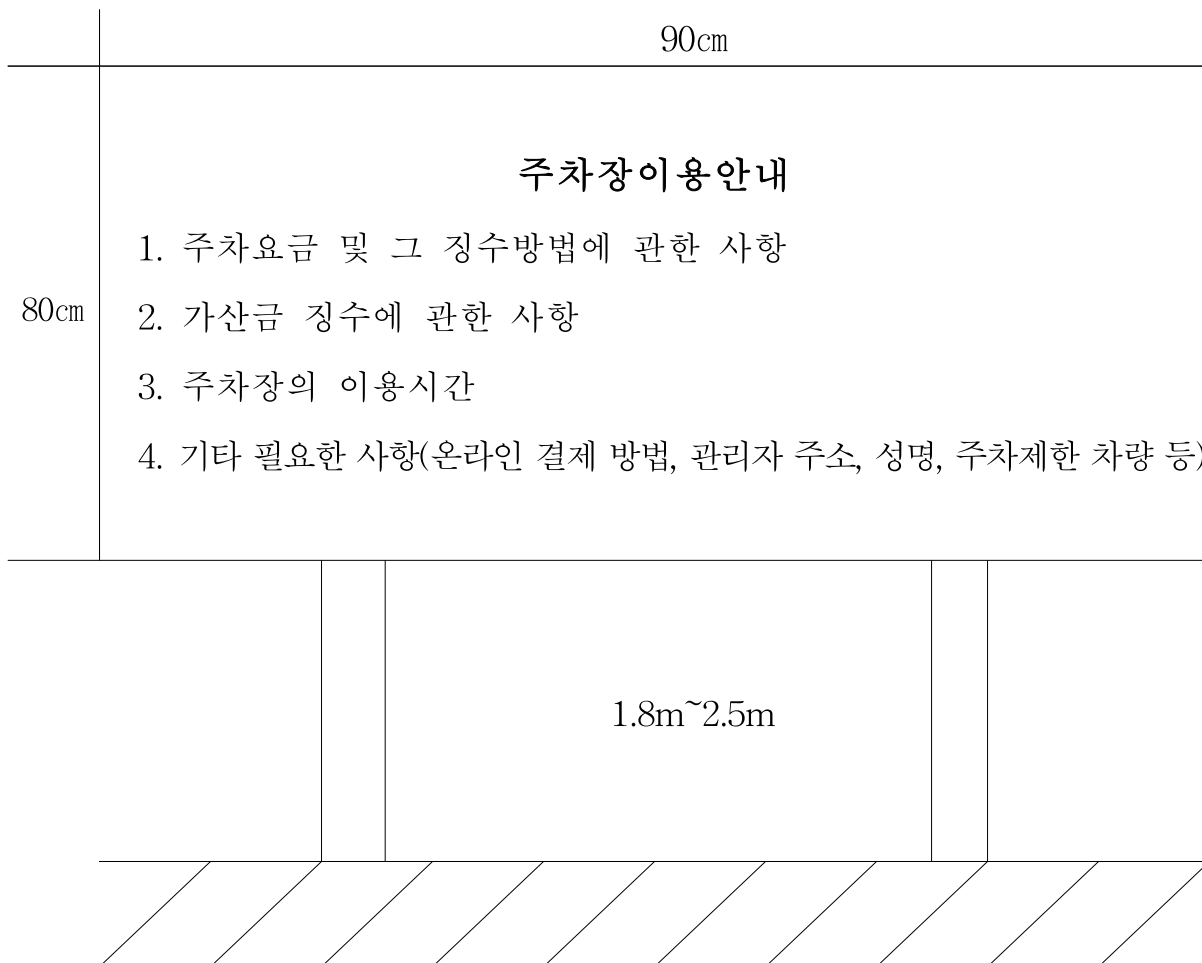
가.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구청장은 월정기 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10대이상의 다수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 부당주차의 경우는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별표 2]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1)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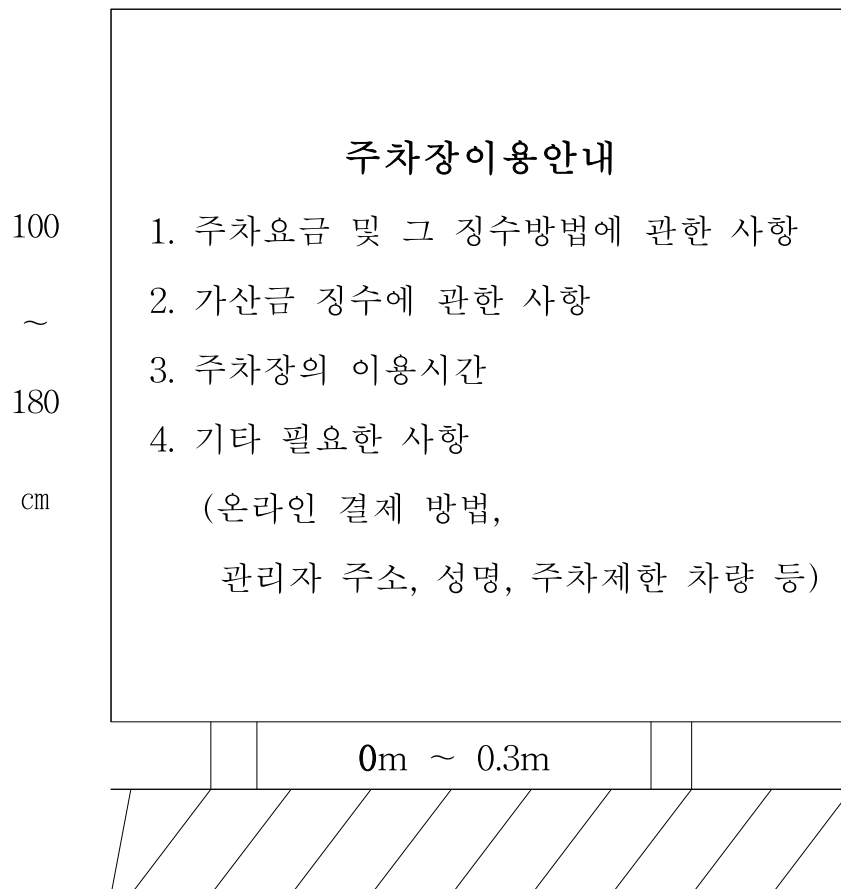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노외공영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에 준함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2)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관련)

50 ~ 9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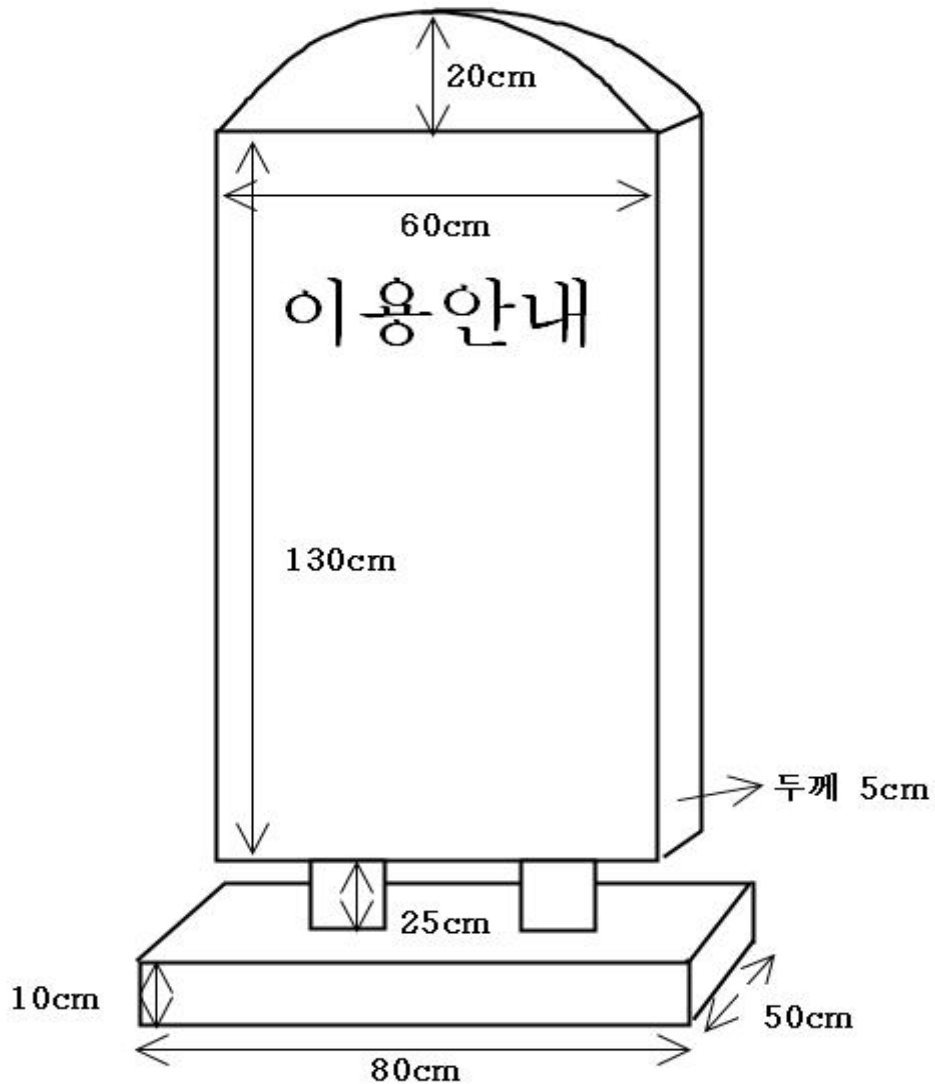


○ 기본사항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미늄판	청 색	흰색, 검정색
노외공영주차장	알미늄판	청 색	흰색, 검정색

※ 위 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주차장 및 도로의 여건에 맞게 모양 및 내용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3)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관련)



- 재 료 : 스테인레스
- 바 탕 : 청색
- 문 자 : 흰색, 검정색

현 행	개 정 안
<u>제1장 총칙</u>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u>주차개시 시간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발견 시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계속 주차한</u>	<u>제1장 총칙</u>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u> 1. <u>주차장에 따라 주차 개시 시간의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주차관제시스템에 주차 개시를 자진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다만, 이때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를</u>

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
산금을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2.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기준으로 1시간이 초과된 것
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
금을 부과하며, 이후 계속 주
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2. ~ 6. (현행과 같음)

7.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
면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
우

8.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
금 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
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
입하지 않은 경우

9. 유료 운영 주차장에 입차 후
10일 이상 주차하며 그 간 이
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
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
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 또는 탑재한 경우

제1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6.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제1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② · ③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

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7. 14.] [부산광역시조례 제6433호, 2021. 7. 14., 일부개정]

제5조(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951호

부의안전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전의 공고)에 따라 제2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1.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 사 실
2.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전 총 괄 과
3.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 화 관 광 과
4.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 육 진 흥 과
5.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 육 진 흥 과
6.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 육 진 흥 과
7.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노인장애인과
8.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남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장애인과
9. 남동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린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장애인과
10.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여 성 가 족 과
11.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 동 복 지 과
12.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 육 정 책 과
13.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보 육 정 책 과
14.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 소 행 정 과
15.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시 경 관 과
16.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시 경 관 과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17. 남동구 범죠평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레안	도시 경 관 과

2021년 10월 5일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960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10.13. ~ 2021.10.28.
3. 공고대상 : 인천 남동 타1831 외 11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 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1-00154	인천남동 타1831	이륜차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1	백*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로8*번길 1*~*, *01호(간석동, **빌라)	2021.6.11.~ 2021.6.25. 2021.7.5.~2 021.7.19.	반송배달-기타 반송배달-기타	2021.5.7. 견인	(주)인천페 차사업소	032-814- 7077	
2	2021-00345	인천남동 파2403	이륜차	남동대로733번길 24(구월동1151-3) 수해어 미용실 앞 도로	장*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로 7*~1*, *동 *01호(주안동, **빌라)	2021.9.1.~2 021.9.15. 2021.9.23.~ 2021.10.7.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1.8.2 0.견인	(주)인천페 차사업소	032-814- 7077	
3	2021-00358	15나237 9	코란도C	남동구 방축로 501 간석우성아파트 2동 뒤 지상 전기실 출입구 옆	박*민 민*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로 *01, 1*동 *08호(간석동, 우*아파트) 경기도부천시상*로*1,1*1 *동*07호(상동,반*마을)	2021.9.1.~2 021.9.15. 2021.9.23.~ 2021.10.7.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1.8. 24.견인	(주)인천페 차사업소	032-814- 7077	
4	2021-00383	91라634 6	봉고III 플러스냉동차	고잔동 787	문*일	인천광역시 중구 참**로**4번길 1*, *층 *02호(도원동, 도원빌라)	2021.9.1.~2 021.9.15. 2021.9.23.~ 2021.10.7.	폐문부재 폐문부재	2021.8. 19.견인	(주)인천페 차사업소	032-814- 7077	
5	2021-00387	28보199 7	C 2.0 TDI Blue Motion	도림동 360-8	주식회사 ***** 디 조*현	경기도 김포시 대*면 쇄*로 15*~*0, 내*동 광주광역시북구양**길1,2 0*(양산동,한*아파트)	2021.9.1.~2 021.9.15. 2021.9.23.~ 2021.10.7.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수취인불명,폐문부재	2021.8.2 6.견인	(주)인천페 차사업소	032-814- 7077	
6	2021-00391	15부988 8	프라이드	남동구 논곡로 78번길 16	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로*8번길 1*, B0*호(논현동)	2021.9.1.~2 021.9.15. 2021.9.23.~ 2021.10.7.	기타 기타	2021.8. 19.견인	(주)인천페 차사업소	032-814- 7077	
7	2021-00392	16소785 7	스포티지	남동구 논현로 106 (논현꿈에그린아파 트)	(주)푸*** 아 최*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로 *7, *층(건건동) 서울특별시영등포구디**로 3*길*0-1*(대림동)	2021.9.1.~2 021.9.15. 2021.9.23.~ 2021.10.7.	수취인불명,기타 이사불명,기타	2021.8. 19.견인	(주)인천페 차사업소	032-814- 7077	
8	2021-00393	26조689 6	아반떼	남동구 답방로 105 (만수주공8단지 아파트)	최*운	경기도 남양주시 평*로1*1번길 *~9, 10*호(평내동)	2021.9.1.~2 021.9.15. 2021.9.23.~ 2021.10.7.	기타 기타	2021.8. 23.견인	(주)인천페 차사업소	032-814- 7077	
9	2021-00397	54너294 7	쏘나타 (SONATA)	만수6동 1085-2	이*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불**로 *1길 1*, 10*동 *02호(논현동, 논현동**꿈**린*차아파트)	2021.9.1.~2 021.9.15. 2021.9.23.~ 2021.10.7.	기타 기타	2021.8. 19.견인	(주)인천페 차사업소	032-814- 7077	

제1639호

남동구 구보

2021. 10. 14. 목요일

10	2021-00401	39누6933	오피러스	만수로 111번길 38 만수신동아아파트 8동 지상주차장	(주)**웰 심*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화***로 1*5(화남지방산업단지 *블록**트) 인천광역시남동구만**로5 *,**1동*01호(만수동,향촌 *****단지아파트)	2021.9.1.~2 021.9.15. 2021.9.23.~ 2021.10.7.	폐문부재,기타 수취인불명,기타	2021.8. 23.견인	(주)인천페 차사업소	032-814- 7077	
11	2021-00448	52도7887	레조2.0S LPG AT	하촌로 59번길 45	신***** 널(주) 김*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로 1*, *1*호(장항동, 드림월드빌딩)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탄* 로**1번길*0-2*,10*호(중 산동)	2021.9.1.~2 021.9.15. 2021.9.23.~ 2021.10.7.	이사불명,수취인불명 이사불명,수취인불명	2021.8. 24.견인	(주)인천페 차사업소	032-814- 7077	
12	2021-00452	86소5222	포터 II (PORT ER II)	수산동 158	(주)우*** ***링 김*준	경기도 시흥시 은*로1*번길 *-7(은행동) 인천광역시미추홀구경**로 7*1,*03호(주안동,노블리 안)	2021.9.1.~2 021.9.15. 2021.9.23.~ 2021.10.7.	수취인불명,기타 수취인불명,기타	2021.8. 26.견인	(주)인천페 차사업소	032-814- 7077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9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이사 불명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12. ~ 2021. 10. 26. (15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3-0199923	휘프레스스 (4precious)	윤**	백범로124번길 126, 402동 1006호(만수동)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처 분 일 : 2021. 9. 24.
6.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7.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8.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2

2021년 10월 12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1-1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1.10.12.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1.10.12. ~ 2021.10.26.(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6 -0199663	필미앤필미(FI LLME & FEELME)	강*진	논고개로136번길 6-6, 1층 일부호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4.01.	2021.10.12.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4

2021년 10월 12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6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8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129 (논현동) 외 5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73 (구월동)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6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129 (논현동)	2009.11.16.	지역명칭 인용	2021.10.8.	건물 등의 주된 소래로 129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29를 건물번호로 부여	소래3 오수중계 펌프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54 (도림동)	2009.11.16.	덕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1.10.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덕골로 54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4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20 (구월동)	2009.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10.8.	건물 등의 주된 석산로228번길 2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0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재천로 35 (서창동)	2009.11.16.	인근에 위치한 결재천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21.10.8.	건물 등의 주된 결재천로 3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5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28번길 8 (구월동)	2009.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10.8.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228번길 8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3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420 (도림동)	2009.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21.10.8.	건물 등의 주된 호구포로 42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20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73 (구월동)	2021.10.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49번길 22 (간석동)	2021.10.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249번길 20 (간석동)	2021.10.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76번길 20 (간석동)	2021.10.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72번길 24 (간석동)	2021.10.8.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6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75호선 외 1)]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를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6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중로	2	75	15	국지 도로	3,625	대3-24	중1-9	일반 도로		1986.11.27. (인고1986- 1049호)	
변경	중로	2	75	15~16	국지 도로	3,625	대3-24	중1-9	일반 도로		1986.11.27. (인고1986- 1049호)	종점부 일부 폭원 1m 확장
당초	소로	1	102	10	국지 도로	474	중2-75	소1-105	일반 도로		1986.11.27. (인고1986- 1049호)	
변경	소로	1	102	10~13	국지 도로	474	중2-75	소1-105	일반 도로		1986.11.27. (인고1986- 1049호)	종점부 일부 폭원 1m 확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중로2-75	중로2-75	· 종점부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B = 15m → 15~16m	· 고잔동 726번지 일원 물 류창고 신축에 따른 건축 위원회 심의의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종점부 일 부구간 폭원 확장
변경	소로1-102	소로1-102	· 종점부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B = 10m → 10~13m	· 고잔동 726번지 일원 물 류창고 신축에 따른 건축 위원회 심의의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종점부 일 부구간 폭원 확장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